

발 간 등 록 번 호

53-6270000-000666-01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Happy Citizens & Proud Daegu

규제개혁 비우다 행복을 채우다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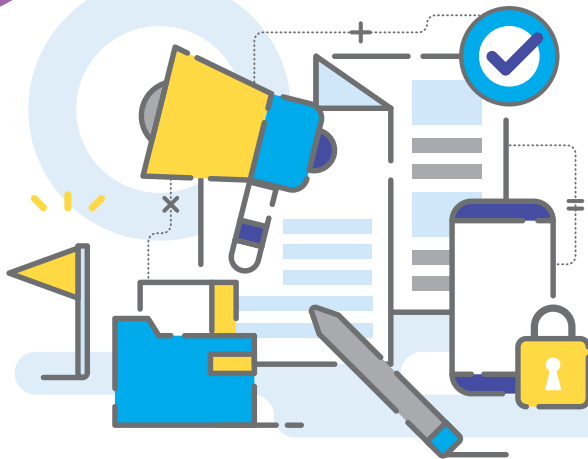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규제를 비우다 행복을 채우다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규제를 비우다
행복을 채우다



지난 몇 년간 대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들을 책으로 엮어 소개드림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공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대구시는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민선 7기 슬로건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전략산업으로 미래형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로봇산업 등 5대 신산업과 스마트시티를 포함해 5+1 미래 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생태계와 달리 법령이나 제도는 새로운 서비스와 신제품 개발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신산업 성장에 저해가 되는 규제로 작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장기이식 범위 손 · 팔까지 확대’, ‘자동차 사이드미러 대체 시스템 허용’, ‘전기 화물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치맥페스티벌 주류판매 합법화’, ‘종량제 봉투 판매지역 확대’ 등 신산업 분야 및 생활 속 규제들을 개혁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결과로 2018년 전국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 화물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애로와 생활 주변의 불편함을 해소한 규제혁신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 · 공유되어 민 · 관이 함께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 12.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목 차

CONTENTS

Part.1 중앙법령 규제개혁 사례



① 신체 이식대상을 손·팔로 확대	7
② 친환경 전기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8
③ 전기 화물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9
④ 초소형 전기자동차 분류기준 마련	10
⑤ 자동차 실외 후사경 대체시스템 장착 허용	11
⑥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 및 최대적재량 제한 완화	12
⑦ 버려지는 인체지방의 재활용 허용	13
⑧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뇌 조직 활용범위 확대	14
⑨ 스마트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15
⑩ IOT 기반 클라우드형 의료정보 지원 규제 특례	16
⑪ 3D프린터를 통해 제조된 의료기기의 인허가 제도 완화	17
⑫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대상자 규제 완화	18
⑬ 국가하천 영구점용허가를 위한 친수지구 지정	19
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20
⑮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도지역 규정 완화	21
⑯ 취약계층 지역 등 민간 위험시설 재난관리기금 확대 사용	22
⑰ 수성못 유람선 야간운행 허용	23
⑱ 종량제봉투 판매지역 확대	24
⑲ 한옥체험업의 이종규제(숙박업) 완화	25
⑳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규제 완화	26
㉑ 복어 가공품 취급 음식점의 조리사 고용부담 완화	27
㉒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 행정처분기준 완화	28



Part.2 조례·규칙 규제개혁 사례



① 전국 최초 지역축제(치맥페스티벌)에서 주류 판매 합법화	30
② 식품접객업소 옥외(옥상)영업 확대	31
③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공영주차장 운영	32
④ 북구 청소년회관 여성보건할인 확대	33
⑤ 신천변 충수 완화 기준 마련	34
⑥ 대구 도심 최저고도지구 전면 폐지	35
⑦ 주거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 어린이집 등 용적률 완화	36

Part.3 적극행정 및 제도개선 사례



① 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허용업종 확대	38
② 전국 최초 도시철도 부대사업 승인 안전기준 마련	39
③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선	40
④ 전입자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편의 개선	41
⑤ 지자체 최초 수도물 수처리제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42
⑥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북구 모든 행정복지센터 확대 시행	43
⑦ 전국 최초 「민원 · 공모 홈서비스」 운영	44
⑧ 토지구획 정리조합 공공공지 폐지 적극 인가	45
⑨ 대형화물차 통행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46
⑩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공존! 대구 최초 전통시장 상생스토어 개설	47
⑪ 배수지 상부를 활용한 친환경 인조잔디 테니스장 조성	48

Part.4 부록



①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50
② 적극행정 먼책제도	52
③ 규제신고센터	53

Part.1

중앙법령 규제개혁 사례



신체 이식대상을 손·팔로 확대
친환경 전기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전기 화물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초소형 전기자동차 분류기준 마련
자동차 실외 후사경 대체시스템 장착 허용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 및 최대적재량 제한 완화
버려지는 인체지방의 재활용 허용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뇌 조직 활용범위 확대
스마트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IoT 기반 클라우드 의료정보 지원 규제 특례
3D프린터를 통해 제조된 의료기기의 인허가 제도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대상자 규제 완화
국가하천 영구점용허가를 위한 친수지구 지정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도지역 규정 완화
취약계층 지역 등 민간 위험시설 재난관리기금 확대 사용
수성못 유람선 야간운행 허용
종량제봉투 판매지역 확대
한옥체험업의 이중규제(숙박업) 완화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규제 완화
복어 가공품 취급 음식점의 조리사 고용부담 완화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 행정처분기준 완화

신체 이식대상을 손·팔로 확대

추진배경

- 「팔 이식 수술」이 신의료기술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0호, '10. 3. 12.) 되었으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팔」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논란 우려 및 기증자 부재로 수술 시행 애로
-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하여도 관련법에 근거가 없어 수술비 및 평생 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에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매월 100여만원의 본인부담금 발생

국내최초 팔이식 수술 “성공”(‘17.2.2 / 영남대학교 병원)

- * 공여자 : 남 48세, 교통사고(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판정 → 장기, 팔 기증 가족 동의)
 - * 수여자 : 남 36세, 1년 6개월 전 공장에서 작업 중 왼쪽 팔을 잃는 불의의 사고
 - * '17. 2. 2. 오후 4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 10시간에 걸친 대수술 진행
- 영남대병원에서 W병원 우상현 병원장과 수부 미세재건팀 10명, 영남대병원 성형외과 이준호 교수 등 25여 명의 의료진 참여



개선내용

- 「팔 이식 수술」 합법화 및 보험급여 추진 : 「장기 등」에 「팔(수부)」 포함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8. 5. 8. / '18. 8. 9. 시행)
- 팔 이식술 수가 책정 및 면역억제제 보험급여 적용('18. 9. 13. / '18. 10월 시행)

개선효과

- 국내 예상 수요 : 팔과 손 절단 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총 7,021명
- 보험수가 및 면역억제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 「팔 이식 수술비 및 약제비」 보험 급여 건의('17. 7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18. 5월) → 동재('18. 9월)
- “메디시티 대구”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통한 의료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17년 의료관광 경제 효과(2만 명 유치) : 고용유발 효과 1,200명, 의료관광수익 845억원

每日新聞

2017년 07월 22일 토요일 008면 사회

대구 의료진 첫 성공 '팔 이식' 합법화된다

복지부 '장기이식 개정안' 예고
손·팔·발·초월 등 신체 부위 넓혀

대구 의료진이 국내 처음으로 성공한 팔 이식 수술이 법 제도의 인으로 풀려왔다. 이에 따라 손·팔 이식 수술의 판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수술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식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의 범위에 손과 팔, 발·초월 등을 포함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가 규정한 사별과 장애, 인력 기준 등을 갖춘 지정 이식 의료기관만 손·팔 이식 대상

자를 직접 선정해 이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식 수술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직접 기증자의 동의와 팔·대상자를 선정해야 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100여 건의 손·팔 이식 수술이 이뤄졌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월 대구의 W병원과 영남대 병원이 팔 이식 수술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국내의 손·팔 이식 수요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지선단경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7천21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말초혈도 장기에 포함됐다. 말초혈은 관수 내 조혈세포를 빼고 외부로 유출해 혈액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이다.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 질환을 치료하는 데 활용된다.

정성현 기자 jacksou@msnet.co.kr

영남대병원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007면 사회

손·팔 이식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 받는다

지자체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성공한 '팔 이식 수술'이 좀 더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손과 팔을 이식하는 수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최고심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열어 손·팔 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에 대상 일원·검사·약제비 등은 별도 결정 확대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팔 이식술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환자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은 약 4천만원에서 200만원가량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다만 일원·검사·약제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원까지 사고나 기타 질병 등으로 손·팔이 절단되면 결

손 부위에 별도로 제작된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 W병원이 36세 남성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뒤 손과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되도록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까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수술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현 W병원장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이식수술 비

용은 물론 매달 100만원 정도 드는 면역억제제 비용이 10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며 "손과 팔 이식이 보다 보편화돼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1월부터 동대·병·의원 이 아니라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고 의료 제공 받으면 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질환 종류가 2개로 늘어난다. 고혈압·당뇨병 등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

박정현 기자 pjj@yeongnam

친환경 전기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추진배경

- 정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한 차량만 유상운송을 허가, 국토부 자체 수급분석에 따라 신규 차량 증차 제한
- '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영업용번호판 발급기준을 신고제→허가제로 전환
- 화물차량들의 도심 집중 운영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대기오염 악화 초래
- 차량 미세먼지 배출 비중 : 화물차 69%, 승용차 0.3%, 버스 3% 등

개선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8. 3. 20.)을 통한 친환경 화물차(수소·전기차)에 대한 위탁·양도 금지조건으로 영업용 번호판 신규 허가 허용

개선효과

- 기업유치((주)제인모터스)를 통한 대구국가산업단 내 생산공장 건립으로 매출 증대 및 신규일자리 창출 (매출액 연 1,500억원 / 신규고용 300명)
- 소음, 대기오염 감소로 주거환경 개선 및 정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정책에 부합



전기 화물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추진배경

- 최근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증가로 1t 전기 화물자동차, 전기 삼륜차 등 다양한 전기차 개발
- 전기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 중량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의 차이가 크므로 적재중량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구분해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3.5km/kWh 이상으로 규정하여 전기차 상용화 개발 및 보급에 애로
 - 환경친화적 자동차만 전기차 보조금, 세제 감면 혜택

개선내용

- 화물자동차의 규모(경형, 소형, 중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개정('17. 12. 14.)
 - 경형 1,000cc 미만, 소형 3.5t 이하, 중형 10t 미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변경전

구분	승용/화물/경·소형 승합				
	저속		고속		
	경형·소형·중형	경형	소형	중형	
에너지 소비효율 (km/ℓ·h)	3.5 이상				

변경후

구분	승용 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경·소형	중·대형
에너지 소비효율 (km/kWh)	3.5 이상	2.3 이상	1.0 이상

개선효과

- 경유 화물차의 상용 전기차 전환 유도를 통한 전기차 시장 활성화 및 보급 확대
 - 화물 전기차 생산 예상 대수 '19년 1,000대, '20년 3,000대, '22년 8,000대 이상
- 적재 중량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마련으로 화물 전기차 생산 촉진
 - 상용 전기차 생산업체(파워프라자, 파워테크닉스, DIC 등 3사)에서 국·내외 생산을 선도



04

초소형 전기자동차 분류기준 마련

추진배경

- 초소형 전기 자동차는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개발경쟁과 보급노력이 치열함
- 국내의 경우 초소형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정의, 분류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산업 육성 및 경쟁력에 제약 발생

개선내용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초소형 전기 자동차 분류 기준 마련('18. 6. 12.)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초소형(전기차)경형, 일반형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개선효과

- 자동차의 종류에 초소형 전기차를 추가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국민 삶의 질 향상



대상차종(트위지) 사진

자동차 실외 후사경 대체시스템 장착 허용

추진배경

- 기업에서 자동차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와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모든 자동차가 후사경 없이 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
- 카메라와 모니터로 측후방을 화면으로 보여 주는 경우 사실상 후사경은 필요하지 않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규제 존재

개선내용

- 실외 후사경을 대체하는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허용('17. 1. 9.)
 - 실내 모니터에 후방의 화면을 전송하는 장비를 설치한 차량의 경우 후사경 없이 도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건의 ('16. 1. 29.)
 - 국무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시 건의 ('16. 4. 2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7. 1. 9)

개정전

제50조(후사경 등)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 및 뒤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후

제50조(간접시계장치)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

개선효과

- 카메라·모니터 관련 고부가가치산업 성장
- 사각지대 최소화 및 날씨 등 외부환경과 무관하게 향상된 시야 확보
- 공기저항 최고 7% 감소를 통해, 연료소모량 최대 3% 개선, 환경오염 개선 효과



미러리스 자동차 외부



미러리스 자동차 내부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 및 최대적재량 제한 완화

추진배경

- 1t 이상의 화물차를 이용하는 화물배송용 차량 외에 최근 친환경 근거리 배송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기 삼륜차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적재중량 100kg, 차량 총 길이 2.5m 이하로 규정
- 전기 삼륜차의 국내 수요 요구와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재중량 100kg 이하를 500kg로 개정하고, 차량 총 길이 2.5m 이하를 4m 이하로 개정 필요

개선내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7. 1. 9.)
- 전기 삼륜차: 길이 2.5m → 3.5m, 최대적재량 100kg → 500kg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건기로 구동되는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에 대해서는(중략) 길이 3.5미터, 최대적재량 500킬로그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선효과

-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전기 삼륜차 기술개발 및 신제품 출시

그린모빌리티 매출 및 고용효과 (단위:억원, 명)

연 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 출 액	463.5	3.5	60	150	250
인력채용	44	4	15	15	10

- 친환경 배송 차량 증가에 따른 소음과 대기오염 감소로 주거환경 개선
- 근거리 물류배송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근거리 물류배송 시장의 발전 및 해외 경쟁력 강화, 전기 자동차 관련 기술 발전



그린모빌리티 델리D5

길이 : 2.8m / 적재중량 : 300kg
※ 환경부 보급평가시험 중



그린모빌리티 신축공장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 준공 2018년 7월/대지면적 7,000㎡
• 생산능력(월) : 전기 삼륜차 200대, 전기 이륜차 500대/월

버려지는 인체지방의 재활용 허용

추진배경

- 지방흡입 시술 후 버려지는 인체 지방을 가공(재활용)하여 화상·창상용 인공피부, 휴먼 콜라겐 등 고부가가치 소재 양산 가능
-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지방을 단순 폐기물로 분류·폐기되고 있는 실정

개선내용

- 폐 인체지방을 재활용하여 인공 피부, 콜라겐 필러 등 개발 허용
- 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제외조항에 인체지방 포함 (환경부, '19년 개정 예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4

개선효과

- 현재 폐기되는 인체 지방 조직에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
- 국내 바이오소재 산업의 신시장 개척으로 국내 10%, 세계 1% 이상의 시장 점유율 확보
- 연간 버려지는 폐인체지방 100t(100,000kg)에서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원(1kg 당 2억원) 정도 생산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으로 바이오 소재 글로벌 기업 육성

영남일보

2016년 04월 28일 목요일 001면 종합

폐기물이 年 20兆 황금알로...규제개혁의 힘

대구商議서 제5차 현장점검회의
黃총리 '인체지방' 법 개정 약속
인공피부·콜라겐가공가능해져

대구지역에서 연간 20조원 규모의 인공피부 원료와 콜라겐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과 대구

시, 경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오소재와 줄기세포 연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디칸(주) 이희영 대표는 "인체 지방은 2차 가공을 통해 콜라겐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양산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단순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한다"며 "지방흡입 시술 등을 통해 나오는 인체지방 100여t에서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원여치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제품생산을 허용하는 시기

에 맞춰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황 총리도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반드시 장착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 실외후사경을 올 연말까지 고성능 카메라와 모니터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해 대구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자동차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시장은 "법령 및 줄만 개정하기로 했는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십조원에 달하고, 시민 행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관영기자 zone6@yeongnam.com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뇌 조직 활용범위 확대

추진배경

-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체법)」은 인체 뇌 조직 활용을 제한하여 병원·의대 해부실습 등으로만 활용 가능, 외부 연구는 불법행위로 간주
- 한국뇌연구원에서 적출된 인간 뇌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 활동 수행 불가
- 뇌 질환 연구를 위해 뇌은행의 뇌 조직 보존·분양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개선내용

-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 발의('18. 3월)
 - 사후 인간 뇌 조직 이용 연구범위 확장(뇌연구 촉진법 제2조 5, 6항)
 - 의과대학(병원) → 의료바이오 연구 현장(한국뇌연구원)
 - 표본·연구용 조직 보존 및 분양 허용(뇌연구 촉진법 제15조 3항)
 - 병원에서 적출한 뇌 조직을 연구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연구자에게 분양 허용

개선효과

- 뇌 질환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예방·진단·치료 등 의생명 연구 활성화
- 치매 등 각종 뇌 질환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 치매 관리비용 (GDP 대비) : '15년 약 13.2조원 (0.9%) → '50년 106.5조원 (3.8%)
 - 치매 진료비 : ('11년) 86백억 → ('15년) 162백억, 연평균 17.1% 증가



스마트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추진배경

- '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헬스케어 의료기기(혈압계, 혈당계,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부하 심전도 장치, 게이트웨이, 진단지원시스템, 심전계, 심박수계, 체지방계, 최대 호흡률 측정기, 인슐린 주입기)외에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없음
- 다양한 웨어러블기기, 스마트폰 앱 등 건강관리 및 웰니스 기기에 대한 허가·심사를 시장에 맞게 확대하여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에 적절한 대응 필요

개선내용

-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와 신속 허가·심사를 위하여 모바일 의료용 앱,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지속 개발·보급
 - 2018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료용 앱 등)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18, 식약처)
 -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18, 식약처)
- 스마트폰 앱 및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품목 확대
 - 스마트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 품목 6개를 신설('18, 식약처)

개선효과

- 스마트헬스케어 환경 조성 및 스마트헬스케어 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의료기기 품목(예시) 스마트 콘택트렌즈



• 제품 구성

- 센서 결합형 콘택트렌즈, 신호수신용 앱 또는 소프트웨어

• 사용목적

-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부착하여 포도당·케톤 농도, 안압 등을 실시간 측정하고 IT기기에 전송하여 환자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18. 7. 2)

IoT 기반 클라우드 의료정보 지원 규제 특례

추진배경

-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고, 전자의무기록 또한 의료기관 내 보관하도록 규정,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불가
- 이에 인공지능 등 기술개발 관련 기업 등이 의료기록에 기반한 정밀건강관리 서비스 분야 진출시 위법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관련분야 진출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정보 제공 클라우드와 스마트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내용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활용을 통해 IoT기반 웰니스산업에 대하여 대구지역 규제특구 지정 시, IoT 기반 클라우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스마트 의료제품 연구개발 추진 가능 ('18. 10. 16.)

개선효과

- 스마트 헬스케어 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 헬스케어기기 산업의 활성화



IoT Clouding 기반 의료정보 기업서비스 예시

3D프린터를 통해 제조된 의료기기의 인허가 제도 완화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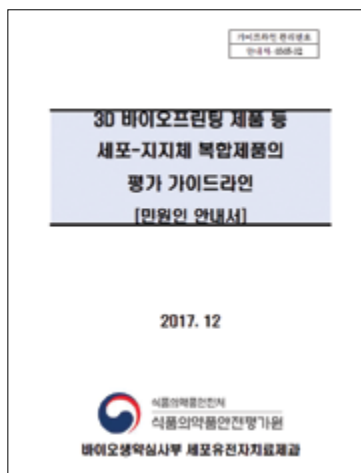
- 현재 의료기기법은 기술 발전에 따른 3D 프린터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생산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현재까지 특정 제품만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기존의 제조업 기계와 달리 3D프린터는 개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
-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는 개인에 따라 그 규격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현 의료기기 법률 체계에서는 매번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

개선내용

-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지지체 복합제품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17. 12월)
 - 바이오 3D 프린터를 GMP* 프로세스로 관리하여 허가받은 재료를 사용하고, 정확도 및 재현성이 검증된 바이오 3D프린터 장비를 사용할 경우 출력물의 사용을 허가
 - *GMP: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의료기기 등의 제조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 3D 프린터로 제조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 규격 제한 완화('17. 6월)
 - 3D 프린터를 통해 허가된 재료를 이용하여 GMP 시설에서 기본 기준규격을 준수하면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조된 의료기기에 대해서 기준규격과 품목허가 규제 완화

개선효과

- 연평균 23%씩 성장하고 있는 3D 프린팅 시장을 기반으로,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3D 프린팅 기술 실용화 선도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선진화
- 3D 프린터를 이용한 산업 적용은 전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로 맞춤형 인공관절, 인공보형물, 임플란트 등의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에 적용하여 품목허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 치료제로 품목 분류 됨으로써, 기존 가이드라인('14.11월)을 개정 ('17. 12월)



3D 프린팅 의료기기 관련 각종 규제 완화 및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로 의료산업 활성화 기대 ('17. 6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대상자 규제 완화

추진배경

- 달성군 다사읍 디아크는 대구 대표 관광지나 주변에 야영장 등이 없어 캠핑 및 다양한 여가활동 제한
- 디아크 문화관을 운영하는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주)워터웨이 플러스는 디아크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법령 규제로 설치제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마을 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각 1회)

개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추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8.12월 예정)

개선효과

- 시민들에게 문화 및 여가생활 공간제공
- 야영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디아크



캠핑 야영장 설치예정지



캠핑장 (데크형)



캠핑장 (글램핑)

국가하천 영구점용허가를 위한 친수지구 지정

추진배경

- 한국잼버리대회 후적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친환경 종합관광레저 스포츠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캠핑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여가선용과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
- 레저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현재 하천지구가 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불가, 친수(거점)지구로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

※ 제14회 한국잼버리 대회 / 2016.8.3.~8.9.(6박7일)

- 장소/주최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 변 / 한국스카우트연맹, 대구광역시, 달성군
- 참가 : 40개국 10,000명(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사회적 배려 청소년)

개선내용

- 하천 기본계획(하천관리지구) 변경 신청·협의(부산지방국토관리청 / '13. 6.~'16. 10.)
-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 고시(하천관리지구 변경 / '16. 9. 7.)
- 복원지구(L=1.6km) → 친수거점지구(L=1.2km) 및 근린친수지구(0.4km)로 변경

개선효과

-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 수상레저사업(사업구간 L=6.6km) 운영('17. 4. 1.)
- 수상계류장(A=894㎡) 및 수상레저기구(16종 83개) 운영, 연인원 5,000여명 이용
- 구지오토캠핑장 및 강변오토캠핑장 운영
- 오토캠핑장으로 카라반(12대), 일반오토캠핑사이트(40개) 운영, 연인원 30,000명 이용
- 향후 한국잼버리대회 후적지 개발 추진
- 야영장 및 종합레포츠체험시설 등 조성(A=216,400㎡) 예정



한국잼버리대회 후적지 현장사진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레저사업 운영



구지오토캠핑장 운영



강변오토캠핑장 운영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추진배경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기초 지자체에서 사업구상서를 작성하여 광역지자체를 경유,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후 사업 시행
-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 증가 및 예산 신속 집행 저해

개선내용

-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미한 사업변경의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사업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변경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17. 9월)

개선효과

-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국토부에 통보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기 반영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주민 만족도 제고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변경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의 현실성, 유연성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

- 사업기간: '14년 ~ '18년(5년)
- 위치 및 부지면적: 대구 동구 안심 연근재배단지 일원 / 1.1km²
- 사업내용: 연근재배단지 일원 친환경 생태문화공간 조성

조성 전



조성 후



대구일보

2018년 01월 22일 월요일 007면 사회

‘대표 도농복합지역’ 인구 꾸준히 늘어 6만여 명 보금자리

동네바다 (26) 동구 안심3·4동

‘안심창조밸리’ 연근재배단지 문화고양으로 조성
승격 없던 금강역, 레일카페 변신 후 관광객몰이

대구 동구 안심동은 후백제 당시 견훤 군사에 쫓겨 도주하던 왕건이 건국의 기틀을 세운 곳이다. 안심(安心)했다는 데서 지명을 따왔다. 1961년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안심1, 2, 3동으로 분동(分洞)되었다. 1983년 안심4동이 신설됐으나 안심3동 인구가 적어 1990년 통합해 안심3·4동이 됐다. 1983년 ~ 4동은 동구 11개 법정동 가운데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이다. 2000년 동구지구 개편 등으로 기존의 인구가 늘었고 2010년대 들어 대구혁신도시·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아파트 단지 등이 대거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안심3·4동 인구는 모두 6만4천429명으로, 당시구 진천동·백련창조지역에 이어 동 단위로는 대구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곳에는 안심창조밸리가 자리하고 있다. 안심창조밸리는 동구의 건만 도시재정비사업이다.

2013년 정부 도시활력증진개발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으며 올해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안심연근재배단지 일대를 친환경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은 전로 한지재민 정과는 나타나고 있다. 승격이 급감해 결국 폐쇄했던 금강역은 주말이면 당근·채소·꽃 등이 팔리는 레일카페로 중심으로 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강역 레일카페는 2008년 1월 포항철도공사가 없어지면서 폐쇄됐던 중이던 여객역에 레일카페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한국생성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안심연근재배단지는 연을 해마다 한 한국 최대의 레일카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꽃이 개화해 장관을 이루 지난해 7월에는 제1회 안심창조밸리 연꽃 축제가 열리고도 했다. 특히 이 축제는 동구청, 동구도시재정비센터와 함께 주민들로 구성된 안심창조밸리 주민참여회가 실무자를 맡아 개최해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구 동구 11개 법정동 가운데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안심3·4동에는 안심창조밸리가 자리잡고 있다. 안심창조밸리는 안심연근재배단지 일대를 친환경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은 전로 한지재민 정과는 나타나고 있다. 승격이 급감해 결국 폐쇄했던 금강역은 주말이면 당근·채소·꽃 등이 팔리는 레일카페로 중심으로 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강역 레일카페는 2008년 1월 포항철도공사가 없어지면서 폐쇄됐던 중이던 여객역에 레일카페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한국생성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안심연근재배단지는 연을 해마다 한 한국 최대의 레일카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꽃이 개화해 장관을 이루 지난해 7월에는 제1회 안심창조밸리 연꽃 축제가 열리고도 했다. 특히 이 축제는 동구청, 동구도시재정비센터와 함께 주민들로 구성된 안심창조밸리 주민참여회가 실무자를 맡아 개최해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도지역 규정 완화

추진배경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 제한을 각각 용도지역별로 적용해 해당 토지의 활용 제한
- 녹지지역이 일정 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건의

개선내용

- 녹지지역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사실상 토지 활용이 곤란함에 따라 넓은 지역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17. 4. 18. 개정)



개정전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후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선효과

- 연간 개발행위허가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5% 예상('16년 305,968건)



취약계층 지역 등 민간 위험시설 재난관리기금 확대 사용

추진배경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공공분야로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사용되도록 한정하고 있음

* 공공시설 보수·보강, 응급복구 장비 임차,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운영 등

- 일부 지자체는 저지대 침수지역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물막이판 설치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법 위반 논란 발생
- 지역 여건상 저지대 침수지역의 일시적인 하수시설 기능 마비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민간분야 재난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시설 설치 필요

개선내용

-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민간영역에 대하여도 지자체의 장이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행안부 / '19. 상반기 개정 예정)

개선효과

- 각종 재난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등을 지자체에서 예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침수가 잦은 취약지역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현관과 창문을 설치하여 빗물 유입 방지 등

현관

설치 전



설치 후



창문

설치 전



설치 후



수성못 유람선 야간운행 허용

추진배경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야간운행에 필요한 조명 등 안전장비를 갖추었을 경우 야간 운행이 가능토록 규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지침」에서는 일몰 후 영업을 금지하여 유선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

개선내용

- 유선 야간운행 안전관리계획 협의 및 제출(농어촌공사, 농림부 / '15. 10. 10.)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지침」 및 「수면의 유·도선업 임대차 표준계약서」개정 (야간운행 허용 / '16. 2. 29.)

개선효과

- 전국 최초 수성못에서 유선 야간 운행 가능
 - 유선이 운행되는 농어촌공사 관리의 모든 저수지에서도 야간운행 가능
- 전국적인 신(新)야경문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이용객 연 4만명 / 운행수입 594백만원 증대 효과
 - 방문객 증가로 주변 상권 활성화

每日新聞

2016년 04월 22일 금요일 001면 종합



유람선 타고 수성못 야경 속으로 “夜好”

대구의 관광명소인 수성못에 건일 조명을 설치한 유람선이 야간 운행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일몰 이후 배를 운행할 수 없다는 농어촌공사의 지침에 따라 일을 전까지 배가 다녔지만, 수성못의 규제 개선 전의가 받아들여져 일몰 이후부터 차장까지 오리 배와 보트, 유람선의 운행이 가능해졌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종량제봉투 판매지역 확대

추진배경

- 「경산시와 인접한 수성구 주민들은 경산의 대형 유통매장을 많이 이용하지만 ‘수성구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은 불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에서 대형유통매장 등은 인접한 시·군·구의 (동일한 시·도에 한함)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

개선내용

-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지역 확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17. 11. 30.)
- 대형 유통매장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인접한 시·군·구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허용 (동일한 시·도제한 규정 삭제)
- 경산시 소재 대형유통매장에서 수성구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시작('17. 12. 11.)
- 수성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개선효과

- 전 국민적 생활 불편 해소, 환경 오염 발생 감소, 불법 투기 억제 효과



영남일보

2018년 04월 06일 금요일 013면 경제

수성구와 맞닿은 경산이마트, 수성구 종량제봉투 판매

이마트 경산점이 전국 대형마트 최초로 인접 지자체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이마트에 따르면 경산점은 지난해 12월부터 경산과 대구 수성구의 종량제 봉투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 경산점은 경산시 중방동과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탓에 수성구민의 방문이 적잖다. 수성구민 방문율은 30% 정도다.

의무휴업 적용일이 각 일요일(대구), 수요일(경산)로 달라 주말에도 많은 수요가 몰리지만, 그동안 관련법상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같은 시·도 내에서

만 구입이 가능해 소비자들은 적잖이 불편을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수성구청의 판매지역 확대 제안을 통해 환경부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인접 타 시·도의 종량제봉투 판매도 가능해졌다.

이연정기자 leey@yeongnam.com

한옥체험업의 이중규제(숙박업) 완화

추진배경

-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나,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에도 해당되어 숙박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건축 관련 법령상 용도 제한규제(숙박업 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가능)가 적용되는 등 다중규제 발생
- 숙박업 미신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이에 한옥체험업을 공중위생관리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개선내용

-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19년 예정)
- 한옥체험업의 위생·안전규정을 별도 마련하고,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개선효과

- 전통문화 체험 등 관광문화 활성화
- 규제 완화로 한옥을 보존하고 있는 한옥 소유자의 한옥체험업 운영 애로 해소
- 전국 1,265개소, 5,678실/ 대구 21개소 87실 운영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규제 완화

추진배경

-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 금지)는 식품위생법 제36조의 식품접객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료 직업소개사업 및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제함
-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이 있으며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개선내용

-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한 겸업 금지를 소비성 서비스에 대해 금지하도록 규제 완화
- 직업안정법 개정('18. 4. 17.)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18. 10. 16.)
- 직업소개사업 겸업이 금지되는 업종을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정함

개선효과

- 겸업 금지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무등록 운영 예방
-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으로 국민의 만족도 제고
- 전국 일반음식점 업주 및 직업소개사업 경영자의 경제활동 영역 확대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초점] 직업소개업 영업 규제 완화... 식당 사장도 겸업 가능

10월 18일부터 시행..위탁급식, 제과점 사업주도 해당돼
면적 최소기준 10㎡로 축소, 겸업 시 가벽 설치 의무 폐지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식당, 제과점, 위탁급식 운영자들도 직업소개소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식당과 제과점, 위탁급식 운영 사업자들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해제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은 현행처럼 직업소개

업 겸업이 금지된다. 소위 말하는 티켓다방처럼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커피 등 다류를 배달·판매하는데 드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휴게음식점도 마찬가지로 겸업이 금지된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여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된다. 기존 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단 무료직업소개소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가 신고할 수 있으며 유료직업소개소와 달리 별도의 법정 시설요건이 없다.

이제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며 “개정 법령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손영남 기자 son361@outsourcing.co.kr

복어 가공품 취급 음식점의 조리사 고용부담 완화

추진배경

-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를 두어야 함
- 식품제조 가공업소 대부분은 내장(독)을 모두 제거한 복어 가공품으로 조리·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라 조리사를 고용하여야 함

개선내용

- 복어 조리사 고용의무 완화
- 식품접객업 중 복어 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복어조리사를 고용하도록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17.12.12. 개정 / '19.12.13. 시행)



개정전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이 영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후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종략) 식품접객업 중 복어 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개선효과

- 복어조리사 고용의무 완화로 영업주의 인건비 감소 효과
- 복어식당 120개소(대구시)에 혜택
- 복어 식당의 진입장벽 완화



복어 가공품(독 제거)을 사용할 경우 복어 조리사 자격증 없이 복어요리 가능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 행정처분기준 완화

추진배경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미용업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을 사용 중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을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

개선내용

- 공중위생업소의 소재지 변경 신고 위반시 “행정처분 합리화”(‘18. 10. 5.)
-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행정처분으로 규제 합리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10.5.) 제19조. 별표 7

개정 전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개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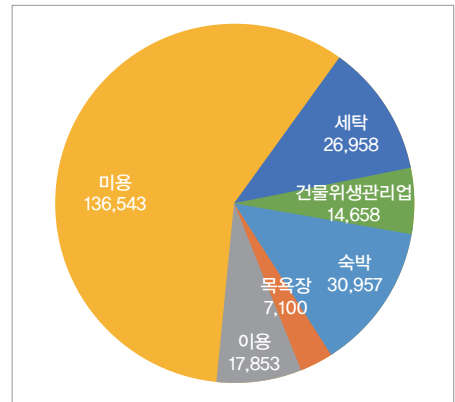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개선효과

- 과도한 행정처분을 규정한 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통한 공중위생업자* 부담 완화
*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및 이용·미용업자 등 전국 234,069개소



미용실



전국 공중위생업소 현황(2017년/전국 234,069개소)

Part.2

조례·규칙 규제개혁 사례



전국 최초 지역축제(치맥페스티벌)에서 주류 판매 합법화

식품접객업소 옥외(옥상)영업 확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공영주차장 운영

북구 청소년회관 여성보건할인 확대

신천변 충수 완화 기준 마련

대구 도심 최저고도지구 전면 폐지

주거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 어린이집 등 용적률 완화

전국 최초 지역축제(치맥 페스티벌)에서 주류 판매 합법화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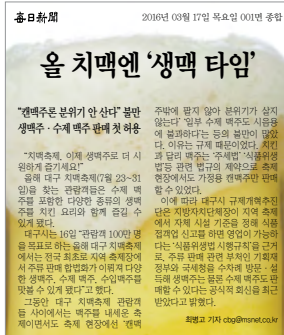
- '15년까지 지역 축제장에서는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에 의거 생맥주·수제 맥주는 시음만 가능하고 판매는 불가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 가능)
-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불가 (한시적 영업자 시설기준 없음)
- 축제 참가자의 생맥주 등 다양한 맥주 판매 요구증가 및 치맥 축제의 성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생맥주 판매대책이 절실

개선내용

- 주세법 제8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판매 가능 (국세청/유권해석)
-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16. 5. 2. / 달서구)
- 치맥 축제장(두류공원) 영업허가 및 국세청 주류 판매 신고 완료('16. 7.)
- 전국 최초로 지역 축제장에서 주류 판매 합법화로 다양한 생·수제·수입 맥주 판매 허용('16. 7.)

개선효과

- 2016 대구 치맥 페스티벌 성공적 개최('16. 7. 27. ~ 7. 31.)
- 참가자수 110만명('15년 88만 명 대비 25% 증가), 외국인 7만명
- 생산유발효과 225억원('15년 167억원 대비 35% 증가)
- 세계적인 맥주축제로의 도약 발판 마련
- 700여개 타 축제나 각종 행사 시 주류 판매 합법화 모범 선례 제시
- 소상공인 수제 맥주 창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식품접객업소 옥외(옥상)영업 확대

추진배경

-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은 “영업 신고 장소 외 영업”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
-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일(2차) → 영업정지 15일(3차) → 허가취소(4차)
- 시민들이 선호하는 ‘노천카페’형 옥외영업 확산 요구
- 도심 관광 상품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영업 필요성 대두

개선내용

- 지자체별 조례(규칙) 및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특례 고시」 등으로 옥외영업 허용
- 민원 발생 최소화 및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시설기준·영업주의 책무 등 관리 규정 제정
-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의 대지 내 공지 등 지자체별 기준 제시
- 옥외영업으로 발생한 민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허용 취소 및 행정처분 규정
- 옥외영업 허용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
- 옥외영업 허용 구역
- 중 구: 동성로 중심상업지역('16. 4. 1.)
- 동 구: 전 지역(팔공산 일대 / '15. 12. 30. → 전 지역 / '18. 11. 28.)
- 남 구: 앞산 맛돌레길, 앞산 카페거리 일원('16. 9. 29.)
- 북 구: 전 지역('17. 6. 1.)
- 수성구: 수성유원지('16. 4. 25.), 들안길('17. 8. 22.) / 전국 최초 옥상 영업 허용
- 달서구: 축계행사장, 전시시설 등('16. 5. 2.)
- 달성군: 냉천유원지('16. 6. 1.)

개선효과

- 옥외영업 400여 개소 운영 및 매출액 10~30% 증가
- 옥외영업 활성화로 관광 매력 도시 기반 조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
-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상권 활성화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 기여



영남일보

2016년 05월 16일 월요일 001면 종합

옥상 문 열었더니 지갑도 열렸다

수성못 옥외영업 허용, 그후

“유럽관광지 온느낌” 고객 반색
200곳 중 18곳이 영업 준비 중
옥상서 매출 절반 올리는 가게도

지난 14일 오후 2시쯤 황은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커피전문점 ‘제리니노스’ 수성메이포를 인근에서 걸음식 사를 마친 뒤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들로 1층 카운터가 붐볐다. 이따금 주연한 커피를 손에 들고 카운터로 향 한 곳은 3층 옥상. 이 매장 옥상에는 수성못 전경을 한눈 에 바라볼 수 있다.

최근에는 열린 지인의 결혼식이 끝난 뒤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을 찾은 커피리더. 2016년 말, 인근 옥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아름다운 수성못 풍경을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곳 같다”며 “미지 외국의 유명 관광지에도 없는 느낌”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화창한 날씨에 옥상이나 테라스에서 차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옥상영업이 수성못의 명물이 됐다. 수성구는 지난해부터 수성못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 하고 있다. 옥외영업의 범위와 ‘옥상’까지 확대한 것은 전국에서 수성구가 처음이다.

15일 대구 수성군청에 따르면 지난해 25일부터 ‘대구 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고 시’ 시행이 시행되고 있다. 고시는 수성못 주변의 식품접객 업소가 옥상을 포함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음식점과 양가 음식로 인한 각종 민원을 방지 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의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금지했다. 실내 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또 인원을 위해 울림 이상 공간에서 옥외영업을 할 경우 추락 등 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은 열려있지 않았 다. 단, 카페지점이나 정숙식점 등 조그마한 가게 들은 옥상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했다. 이에 수성구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수성못 일 대의 옥상 및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백종원 기자 park85@yeungnam.com

03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공영주차장 운영

추진배경

- 도시재생사업 지역인 비산2·3동과 내당2·3동의 명물거리(달성토성, 무침회골목)의 도로정비 계획이 불법 주·정차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반발과 관광객의 주차 공간 미확보로 교통 불편
-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 자율조직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필요

개선내용

-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수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 자율조직에게 위탁 가능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18. 4. 20. 개정)

개선효과

- 2개동 2개소 주차장 주민자율조직(상인회 등) 운영
- 불법 주·정차로 혼잡하던 도로가 깨끗하고 안전한 명물 거리로 변화
- 주민 자율조직에 의한 주차장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



내당2.3동 무침회골목내 공영주차장



비산2.3동 달성토성

북구 청소년회관 여성보건할인 확대

추진배경

- 청소년 회관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월 강습 여성회원에 대해서는 조례(시행규칙)로 이용료의 10% 할인 시행
- 반면, 같은 체육시설인 헬스클럽 이용자는 별도 규정이 없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건 할인 적용 대상자 확대 필요

개선내용

- 북구청소년회관 여성 보건할인 적용 확대 : 수영장 → 수영장, 헬스장
-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18. 3. 30.)

제8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의 장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 ~ 6. 생략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월회원에 한하여 10% 감면(개정 2018.03.30)

개선효과

- '18년 9월 현재 할인 대상 인원 : 2,211명(수영 2,034명, 헬스 177명)
- 여성보건 할인 적용 확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

종목	구분		강습료	10%할인(보건) 만13세~55세여성
휘트니스	성인	주5회	72,000원	64,800원
	청소년	주5회	57,000원	51,300원
복합	수영 주3회+휘트니스 주2회		91,000원	81,900원
	수영 주2회+휘트니스 주3회		91,000원	81,900원

요금표



헬스장

신천변 층수 완화 기준 마련

추진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경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층수 제한
- 신천변 100m 내외 지역은 경관관리 등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관리
- 사업 대상지의 특성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하나,
- 층수 완화 심의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개별사업 시행 시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와 층수 완화 사이에 행정청과 사업자 간 갈등과 개별사업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내용

- 신천변 층수 완화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18. 4월)

공공 공간 비율	2.5%이상	5.0%이상	7.5%이상	비고
완화율 (층수 환산)	10% (평균층수 1층)	20% (평균층수 2층)	30% (평균층수 3층)	단, 신천변과 면한 주동은 12층 이하
적용 층수	평균 13층	평균 14층	평균 15층	

개선효과

- 층수완화에 대한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행정 신뢰성 제고
- 공공 공간 제공을 통한 층수 완화로 신천변과 연계된 공개공지 추가 확보
- 신천변과 면한 주동은 12층 제한을 유지함으로 경관관리 최소 기준 유지



每日新聞

2018년 4월 30일 금요일 09:09 경제

신천변 신축 아파트 최고 16층 건립 가능

(조합 아닌 개인사업자 추진 경우)

(평균)

【市 도시계획위】층수 완화 조례 100m 내 12층 제한 처음 풀어 공공기여 따라 최대 4층 늘어 신축사업 계획 때 갖대 될 듯

대구 의뢰인이 국내 처음으로 대도시가 도시경관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천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층수 완화를 조건으로 마면과 관할이 모이고 있다.

신천은 산지형 공원, 단성토성, 금호강 등과 함께 대도시가 경관 관리를 위한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층수 완화 정책을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신천 100m 이내를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묶어 공동주택 층수를 제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한 개인사업

자가 수성구 중동 회암로 일대 부지 1155㎡(약 2817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의 중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안을 시에 제출하면서 부동산 업계의 눈길이 쏠렸다. 같은 민간사업자가 논의를 벌이고 있는 신천변의 아파트 층수를 결정할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천변에 들어선 아파트들은 대부분 도시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은 공동주택의 제정법·제정법 사업에서 층수 완화 조정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웠다.

도시환경정비법 제정법 등 공공기여를 위한 층수 완화 입법제도를 층수 완화는 규정이 없어서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론성 여부 여지가 있었지만, 올해 신천변 제정법·제정법 사업을 통해 탄탄한 아파트 중 전체 66%가 13층 이상의 고층이다.

그러나 중동 공동주택 신축 사업은 주택가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시 주택법을 적용받는 관계로 그런 시가 고민해 왔다.

대도시 관계서는 "주택법에는 층수 완화 규정이 없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시 조례 제34조를 적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 신천변 공동주택 층수 완화 기준은 공공기여도에 따른다는 의견으로 압축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천변 100m 내에는 12층을 기준으로 10~30%의 공공기여도에 따라 평균층수를 1층에서 최대 4층까지 완화한다는 기준을 세울 계획이었다.

가령 10% 공공기여를 하면 평균층수

12층 범위 내에서, 최대 30% 평균 공공기여 16층 범위 내에서 다양한 층수를 배치한 건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공공기여도와 상관없이 신청된 바로 달하는 등(이)함에 대해서는 12층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따로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기여도에 대해서는 2조항 및 제1항항목도 16층지정면 및 경관보존형으로 16도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결론은 대도시 도시계획위원장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신천변 개인사업자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층수 완화 기준 및 층수율 등 공공기여도, 면적률, 도시계획법 등에 적용으로 결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많은 개인사업자가 신천변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계획할 때 결정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훈 기자 pencho@naver.com

대구 도심 최저고도지구 전면 폐지

추진배경

- '60년대 대구 도심부의 고밀도 개발을 위하여 최저고도지구 지정
- 위치 : 중구 구 도심 일원, 면적 : 3.02km²
- 대구 도심 일대에 저층 건축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시 최저고도지구 높이 규정 9.9m 이상을 적용함에 따라 시민 불편사항으로 작용
- 당초의 지정 취지와는 다르게 건물 옥상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을 올리거나, 노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여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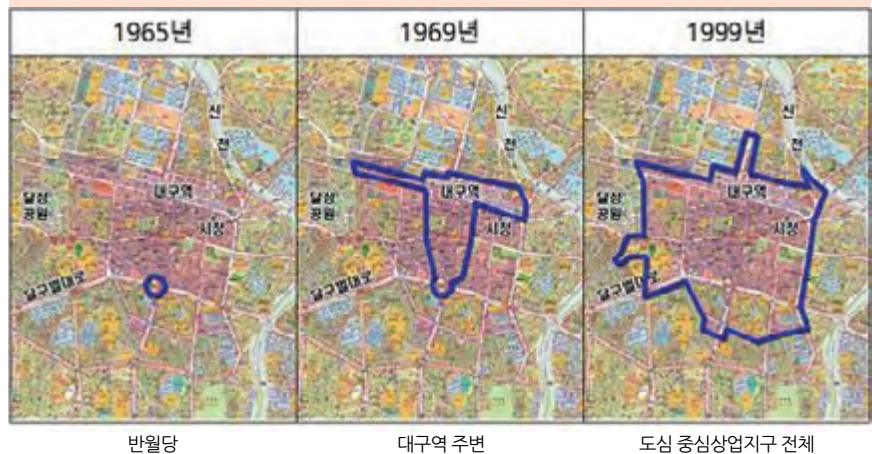
개선내용

- 도심 최저고도지구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전면 폐지('15. 12. 30.)
- 층수에 구매받지 않는 자유로운 건축 및 노후 건축물 개선 활성화

개선효과

- 노후 건축물 등으로 인한 도심 슬럼화 방지 및 시민의 원활한 사유재산권 행사로 경제활동 촉진
- 근대건축물과 한옥 등 근대화자산의 보존과 관광 자원화 등 도심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16년 신축·증축은 148건으로 '15년 99건보다 49건(49.5%) 증가
- 이 가운데 2층 이하 건물 신축·증축이 43건(28.9%)

대구 도심 최저고도지구 변천 (2015년 전면 폐지)



주거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어린이집 등 용적률 완화

추진배경

- 서민·청년층 주거 문제 심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가격 안정화 추진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무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육아 부담 경감 및 노인복지 기반 강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노인복지 및 아동 교육환경 개선 필요

개선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추가건설 허용
- 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의 경우 법정 최대 용적률 적용
-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공포('18. 10. 1.)

개선효과

-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해당 지역 용적률을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건설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가격 안정화 기대
- 국가·지자체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을 법정 최대 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아동 교육환경 개선과 노인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



Part.3

적극행정 및 제도개선 사례



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허용업종 확대

전국 최초 도시철도 부대사업 승인 안전기준 마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선

전입자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편의 개선

지자체 최초 수돗물 수처리제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북구 모든 행정복지센터 확대 시행

전국 최초 「민원·공모 홈서비스」 운영

토지구획 정리조합 공공공지 폐지 적극 인가

대형화물차 통행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공존! 대구 최초 전통시장 상생스토어 개설

배수지 상부를 활용한 친환경 인조잔디 테니스장 조성

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허용업종 확대

추진배경

- 현재 대구 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입주 가능 업종은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식품(11) 및 음료 제조업(10)은 제외
- ㈜옥천당은 원외탕전, 한의약품, 한방식품 연구개발 및 제조 기업으로 대구 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에 입주하였으며, ‘고함량 한약제제 제형양산 기술’을 개발하여 한의약품 제조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생산 제조가 가능한 공정시설까지 구축한 상태지만 의료R&D 지구 내 업종제한으로 건강식품제조가 불가능한 상태
- 외부생산은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애로사항 발생

개선내용

- ㈜옥천당에서 개발한 ‘고함량 한약제제 제형 양산 기술’은 한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모두 생산 가능하며, ㈜옥천당의 경우 신규 업종 확장이 아닌 기존사업 범위 내 신제품 생산 불가로 인한 문제임을 확인
- 특구 관리계획에 따라 대구시 및 관련 인허가 기관과의 세부사항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옥천당과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입주 변경계약 체결(18.12월)

개선효과

- ㈜옥천당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매출 확대 및 신규일자리 창출
- 현재 신기술을 통해 비만치료제(1건) 생산을 하는 중으로 건강식품에 적용, 본래의 한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력 확보



전국 최초 도시철도 부대사업 승인 안전기준 마련

추진배경

- 도시철도 부대 사업의 경우 도시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방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 임대시설물 설치 시 규모에 상관없이 대구시의 승인 필요

개선내용

- 도시철도 부대 사업 승인 지침 마련 (17. 6월)
 - 도시철도 부대사업 시행시 안전성·편의성·경제성 중심의 임대시설물 설치기준 수립
- 도시철도 부대 사업 승인 세부지침 마련 (17. 12월)
 - 부대 사업의 규모별로 타당성 분석 전문기관과 사전협의 후 승인
 - 80㎡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도시철도공사 자체 분석에 의거 심의

대구도시철도 역사 내 부대사업 규모별 승인방법

구분	사업기준	타당성분석주체
대규모	• 사업비 10억원이상 또는 부스면적 200㎡ 이상	대구경북연구원
중규모	• 사업비 10억미만 또는 부스면적 80㎡~200㎡미만	대학연구소
소규모	• 부스면적 80㎡미만	도시철도공사

개선효과

- 도시철도 부대 사업 승인 시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정성, 수익성, 경제성을 고려한 부대사업 운영
- 소규모 임대시설의 신속처리로 시민 편의 도모 및 일자리 창출



0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선

추진배경

- 신청 대상 : '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대구 2년 이상 거주 필요)
- 지원 금액 : 최고 165만원
- 사업 절차 : 접수 ⇒ 대상자 선정 ⇒ 폐차 ⇒ 보조금 지급

개선내용

- 신청서 제출방법 : 시청 방문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지원대상 선정방법 : 선착순 → 접수 후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서로 1,000대 선정
- '18년 9월부터 인터넷 접수 및 지원 대상 선정 방법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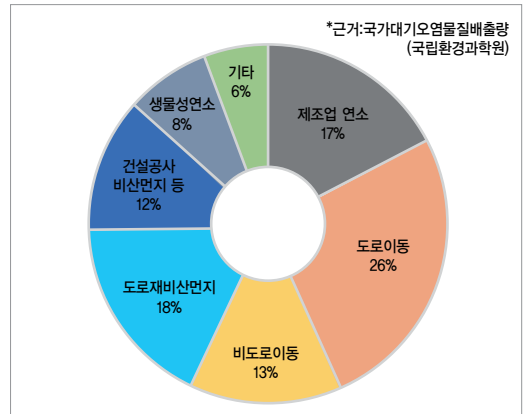
개선효과

- '18년 신청서 접수 결과 2,931대 접수(방문 1,670대, 인터넷 1,261대)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편의 제고
- 연식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하여 미세먼지 감소 효과 제고



노후 경유차 매연배출

- '05년 이전 경유차, 신차 대비 매연 8배 -



대구시 미세먼지 배출비율

- 미세먼지의 57%, 경유차 등 수송 분야 -

전입자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편의 개선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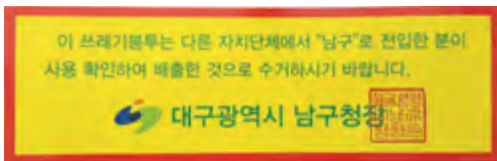
- 구·군간 전·출입시 주민센터에서 인증 스티커를 발부받아 잔량의 봉투에 부착해야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어 시민 불편 초래
- '16년 대구 구·군간 전입자수 127,156명, 전입 세대수 50,862세대, 스티커 제작예산 연 20백만원
-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쓰레기봉투에 붙일 스티커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 필요

개선내용

- (구·군간 전입자) 스티커 부착 없이 종량제봉투 배출 가능토록 개선
- (타 시도 전입자) 스티커 부착 가능 매수 확대(10매→20매)
- 타 시도 전입자는 종량제봉투 가격 차이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해 매수 제한

개선효과

- (시·민) 구·군간 전입자는 주민센터 방문 불편 해소, 타 시도 전입자는 10매 이상 남은 봉투도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 상승, 연간 13만 세대 이상 혜택
- (행정기관) 스티커 제작·발급을 위한 예산(연간 2천만원 이상 절감)과 행정력(관리·발급·고지 등) 낭비 감소, 업무부담 감소로 직원 만족도 상승



전입자용 스티커



스티커 부착 모습

중요정보

2017년 03월 24일 금요일 Y23면 지역

이사가도 쓰레기봉투 그대로 쓴다

대구 8개 구·군 내달부터 공동사용 다른 시·도서 전입엔 스티커 부착

대구 남구에서 이웃 지자체인 달서구로 이사를 가면 기존에 쓰던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는 사용할 수 없다. 굳이 그대로 쓰려면 달서구 등 주민센터를 찾아가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차가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

달서구에서 수성구로, 수성구에서 북구로, 동구로 이사를 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환불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남은 쓰레기 봉투를 버린다.

앞으로 대구에선 쓰레기 봉투를 버리지 않아도 된다. 다음달 1일부터 대구 구·군간 이사를 해더라도 전 거주지에서 쓰던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대구 8개 구·군은 3L부터 100L까지 8종류의 쓰레기 봉투를 똑같이 사용하고 가격도 적게는 100원부터 많게는 2770원으로 같다. 지자체별로 쓰레기 봉투에 쓰인 문양이나 문구만 조금씩 다르다. 혼용해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대구지역 이외 다른 시도 전입자는 기존 방식 그대로 스티커를 이사온 지자체 등 주민센터에서 발부(20장까지 발부)받아 쓰레기 봉투에 부착해야 한다.

김원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지자체 최초 수돗물 수처리제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추진배경

- 수돗물 생산 시 투입되는 수처리제*는 판매자가 적합 검사 후 결과 제출
*수처리제 : 물을 정화하는 응집제, 소독제 등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처리제
- 정수장에 납품된 수처리제는 자체 재검사 완료일까지 사용 불가, 납품 대금 지연

개선내용

- 위생 안전인증제품을 사용, 수처리제 품질검사를 공장, 위해성, 품질, 정기검사로 확대
- 제품 납품 후 사용단계를 단축, 신속한 수처리제 사용과 제품 납품 즉시 대금 지급

기존(4단계) ▷	제품선정	→	검사의뢰	→	사용대기	→	사 용
개선(2단계) ▷	제품선정	→	한국상하수도협회 검사로 대체			→	즉시사용

※ KWWA 수처리제 위생 안전인증제도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수처리제 생산과 유통까지 품질, 안전성을 인정하는 제도 / '16년 3월 지자체 최초 수처리제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시행

개선효과

- 수처리제 품질 검사에서 수돗물 위해성 검사까지 확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제품 납품 후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 정수장 내 시설 개선, 업무 간소화 실현
- 중소기업 검사 비용 절감,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경영개선 기여



정수처리장 유입 원수



정수 처리 과정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복구 모든 행정복지센터 확대 시행

추진배경

- 카드 결제 보편화 흐름에 따른 카드 결제 요구 증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시행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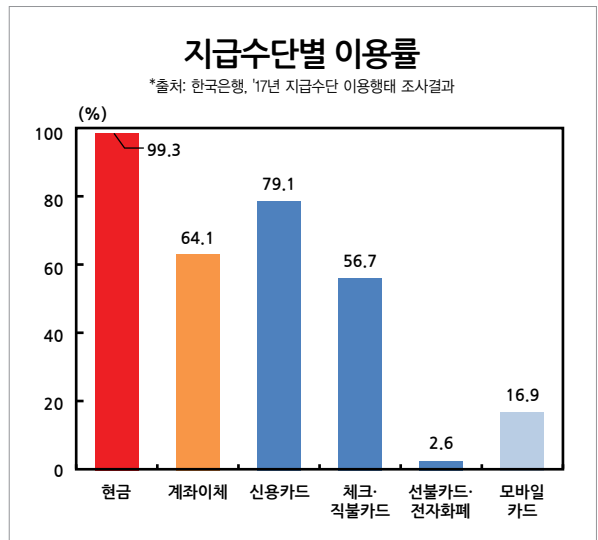
- 복구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및 분소에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각종 민원수수료 (1천원 이하 포함) 지불수단 확대
- '19년 상반기, 복구 관내 26개소(주민센터 23개소, 분소 3개소) 대상

개선효과

- 민원수수료 출납 과정 투명화 및 지불수단 확대로 민원편의 제공
- 지불수단 확대로 주민만족도 상승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



도입예정 카드단말기



증가하는 카드이용률

전국 최초 「민원·공모 홈페이지」 운영

추진배경

- 민원인이 허가증,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신청한 후 발급문서 수령을 위해 다시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시정 관련 공모, 모집 참여시 기존 팩스, 우편,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창구를 구축하여 시민편의 민원 서비스 제공

개선내용

- 「민원·공모 홈페이지 (<http://minwon.daegu.go.kr>)」 구축·시행('18. 6. 28.)
 - 민원 온라인 신청 및 발급
 - ⇒ 위·변조 방지기술을 도입한 민원서류 발급, 전자지불대행서비스를 통한 민원수수료 납부
 - 공모/모집 사업 온라인 신청, 관리
 - ⇒ 시정 관련 공모/모집 신청서비스 제공, 신청인에게 접수 여부 및 처리 결과 정보제공

개선효과

- 민원, 공모 신청의 온라인처리로 민원편의성 증대,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 1,273건 온라인 접수
- 연간 5천여건의 신청으로 약 7천8백만원의 비용 절감 기대
 - 민원인의 기관 방문에 따른 비용, 시간 절감 및 행정비용 절감
- 통합창구 관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및 자료 활용 용이



민원·공모 홈페이지(<http://minwon.daegu.go.kr>)

토지구획 정리조합 공공공지 폐지 적극 인가

추진배경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 재정악화 등으로 '16년 완공예정인 공동주택설립 무산 위기
- 사업무산과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에 직면한 조합 측에서 부족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공공공지를 체비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16. 7. 1.)
- 담당부서에서는 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형평성 문제 등으로 소극적
 - ※ 공공공지 : 주요시설물, 환경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통행,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 체비지 :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자원마련을 위해 처분 가능한 토지

개선내용

-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통해 불합리한 인가행태 개선('16. 9. 21.)
 - 최초 인가 당시인 20년 전과 달리 조합원들이 약 40여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 도로, 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이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충족되었다면 조합측의 애로해소 및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공공공지 폐지가 가능함
 - 전례가 없다거나 기부채납 예정 토지라는 이유로 기부를 강요함은 잘못된 관행이며, 지역민의 애로해결과 경제발전을 고려해 변경 인가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계획 변경 인가('16. 10. 11.)
- 사업 준공('17. 4. 20.)

개선효과

- 사업지구 내 1,627세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



규제개혁위원회 통해 행태개선 건의('16.9.21)



공동주택 준공('17.4.20)

대형화물차 통행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추진배경

- (주)동산화섬에서 통행로에 접한 각산동 293-1번지(사유지) 도로모퉁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향나무(사유재산)로 인해 원사 가공공장에서 자재(原絲) 납품을 위한 대형화물차 통행에 3년여간 애로가 있었음을 호소('15.10.1.)
- 민원기업 : (주)동산화섬(각산동 295-14, 연매출액 30억원)

개선내용

- 부지 및 수목 소유자 측과의 중재(현장방문 8회, 간담회 5회, 통화협의 10여회)로 대형화물차 통행에 방해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및 수목 철거('15. 10. 24)
- 향후 부지매매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등 사유지에 불합리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약서 갱신('16. 7. 20)

개선효과

- 사유재산 관련 문제로 행정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지역기업 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정자 역할 이행으로 관내 기업만족도 제고
- 일방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차량 감소분에 따른 피해배상 방안(토지 이용료로 월 10만원) 제시로 양 당사자가 만족하는 합의안 도출
- 대형화물차 자재납품 곤란으로 인한 기업운영 애로 해소 및 자재운반비 및 외부 창고 운영비용 등 연간 2,940만원 정도 절감
※ 연간 절감비용 추정액 = [지게차, 소형트럭 운영비용 월 45만원(1회 15만원 × 3회) + 외부 자재창고 운영비(월 임차료 200만원)] × 12개월



현황도



현장사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공존! 대구 최초 전통시장 상생스토어 개설

추진배경

- 경기불황 및 유통환경의 변화로 전통시장의 위기 도래, 위기 극복을 위해 전통시장 내 이마트 상생스토어 유치 추진
- 인근 시장상인들의 입점 반대로 사업 무산 위기

개선내용

- 월배시장 상인회·이마트 측과 월배신시장 상인회 등의 갈등 중재로 대구 최초 전통시장 내 상생스토어 개점('18. 8. 30.)
 - 준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및 입점 반대 민원 제기 및 유통분쟁('18. 5월)
 - 중재 및 상생협약서 체결(월배시장↔이마트↔월배신시장 / '18. 8. 20.)
 - ※ 월배시장 내 상생스토어(1,134㎡) : 노브랜드매장, 희망어린이놀이터, 카페/쉼터, 달서구사회적경제 기업 홍보관, 커뮤니티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 조성

개선효과

- 방문고객 증가에 따른 매출증대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동반 성장
- 청년, 경력단절여성을 활용한 고객 편의시설 관리 등 전통시장 일자리 창출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상생모델 전국 전파



월배 시장 입구



상생스토어 입구

배수지 상부를 활용한 친환경 인조잔디 테니스장 조성

추진배경

- 민간 테니스장 폐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테니스장 신설 건의
- 신규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예산 및 적정부지 확보 애로

개선내용

- 배수지 상부를 활용한 친환경 인조잔디 테니스장 조성·개방 ('18. 1월)
※ 배수지 :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되기 전에 잔류염소제거 및 급수량을 조절하는 상수도시설

개선효과

- 주민개방시설로 운영하여 주민 및 체육 동호인들의 만족도 향상
- 1일 평균 50명, 월평균 1,500여명 이용
- 예산 절감 및 단 기간에 친환경 인조 잔디 테니스장 조성
- 부지매입 시 70억원 이상의 사업비 소요, 사업 장기화 불가피
- 배수지상부를 활용하여 8억원의 건립비로 1년여의 기간에 인조잔디 테니스장 조성

시행 전

- * 배수지는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출입문 및 진입도로 쇠사슬 설치
- * 많은 환기구로 테니스장 건립 불가



시행 후

- * 배수지 중요시설의 안전장치 설치
(CCTV, 이중 잠금장치 등)
- * 환기구를 테니스장 바닥에 매설하여 환기구 및 테니스 동호인 안전 확보



Part.4

부록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규제신고센터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사전 컨설팅 감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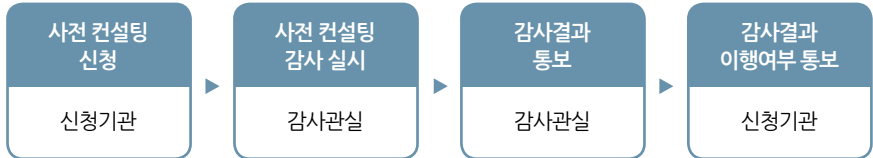
-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와 관련된 불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

대상 및 범위

- 대상 :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
- 시, 구·군,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금고, 예산 보조단체·기관,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등
- 범위 : 대상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다음 각 호

- *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 관련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그 밖에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절차 및 효력



- 효력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사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자체감사 면제



사례 공원 경관유지를 위한 양수장 가동 경비 지원

컨설팅 요청 내용

- 달성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에 군 예산 7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생태수변공원(송해공원)을 조성함
- 군은 경관을 위해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하기를 원하나, 저수지 용수를 이용하는 농민들은 경관 확보 보다는 농업용수의 이용이 시급하기 때문에 군의 적정 유지수위 확보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었음
- 이에 해당 군과 공사는 저수지의 용수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낙동강 변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장을 가동하여 관계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대안으로 추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 그러나, 보조금 지급 단계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공기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컨설팅 감사 결과

-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군에서 국가공기업인 농어촌공사로의 보조금 지급은 불가하지만, 군에서 양수장 가동을 추진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의 지급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
 - 비용의 지급방법을 보조금 형태가 아닌 실비정산 방식의 사용료(수수료) 형태로 하여 발생된 비용을 보전해 준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불가' 문제 해결
 - 실제 사용된 전기료 등을 정산하는 등 보조금 형태의 지급보다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
- * 이를 통해 생태수변공원의 적정 수량 확보와 차질 없는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농민들의 생업지원과 경관공원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양립할 수 있게 됨

컨설팅 감사 前



컨설팅 감사 後



추진 배경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면책함으로써 감사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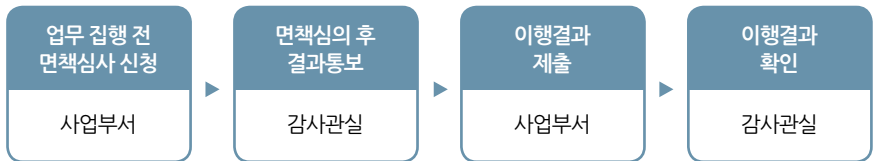
면책 요건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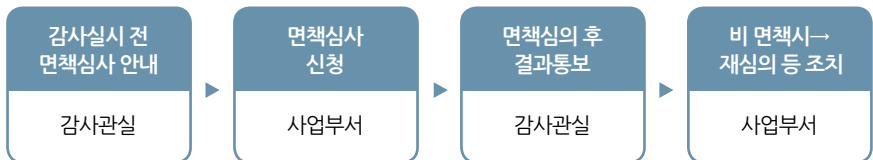
※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제외

면책 절차

사전면책



사후면책



규제신고센터

규제애로 신고방법

■ 규제개혁신문고

- 온라인 : www.sinmungo.go.kr
- 국무조정실 운영 규제개선 건의 창구(규제건의, 국민제안공모 등)

■ 중소기업옴부즈만

- 온라인 : www.osmb.go.kr / 전화 : 02-2100-4900
- 중소기업 규제, 애로신고, 기업민원 피해신고

■ 대구광역시 규제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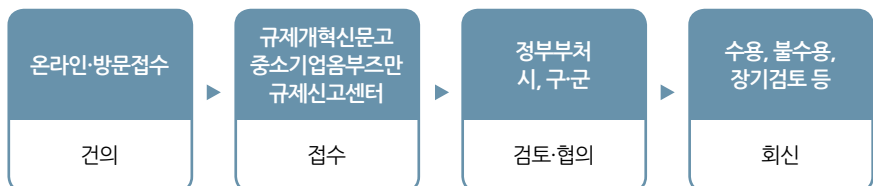
- 온라인 : 두드리스(dudeuriso.daegu.go.kr) / 전화 : 053-803-6141~3
- 방문 및 전화

구분	부서	전화
대 구 시	규제개혁추진단	053-803-6141~3
중 구	기획예산실	661-2142,3
동 구	기획조정실	662-2141,2
서 구	기획예산실	663-2152,4
남 구	기획조정실	664-2143,7
북 구	기획조정실	665-2482,3
수 성 구	기획조정실	666-4272,7
달 서 구	기획조정실	667-2141,3
달 성 군	법무감사실	668-3781,2

■ 규제정보포털

- 온라인 : www.better.go.kr
- 국무조정실 운영 / 규제현황, 규제혁신과제, 규제법령 등 정보 제공

규제신고 처리절차



규제개혁
비우다
행복
차이우다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대구광역시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전화 (053)803-6141~3
홈페이지 www.daegu.go.kr

